

「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- 나. 제출자: 구미시장
- 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- 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 설명자: 기획조정실장 박 정 은

나. 제안이유

- 2025년도 구미시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- 출연 예정금액 : 57,152천원(시비 100%)
- 출연필요성
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고, 또한 「지방세기본법」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에 해당.
- 법적근거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-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1) 출연 동의요구서

기관명	한국지방세연구원					
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- 주요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·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					
출사연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57,152천원(시비 57,152천원)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					
	구분	2024년도 출연금	2025년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
출연금 (시비 100%)	59,447	연구원 요구액	부서 산정액	증 감		
		57,152	57,152	-	감2,295	
출연필요성	○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					
근거·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· 운영) ○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· 운용) ○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					
지도감독부서의견(총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정기 간행물 발간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, ○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,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 ○ 특히,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 					

2) 출연 기관현황(한국지방세연구원)

설립근거	법 률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						
주요연혁	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,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	출연	
인원현황 (2024년 7월 현원기준)	○ 정원 88명 / 현원 71명 * 육아휴직 7명 포함						
	구 분	계	원 장	관리직	연구직	전문직	사무직 등
	정 원	88명	1명	3명	56명	5명	23명
	현 원	71명	1명	3명	40명	4명	23명
	총인원	97명	정원의 인원 26명 (과건공무원13, 위촉연구·전문원8, 행정원등5)				
※ 연구직(40명) : 연구위원직 20명, 연구원직 12명, 조사분석직 8명							
임 원 (2024년 7월 현원기준)	직 책 (직책명)	성 명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		비 고
	이 사 장	정 종 섭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			
	부이사장	박 우 량	전라남도 신안군수				
	이 사	강 성 조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			
	이 사	김 성 기	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				
	이 사	김 진 만	서울특별시 재무국장				
	이 사	이 상 호	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				
	이 사	김 종 필	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				
	이 사	최 명 동	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				
	이 사	류 규 하	대구광역시 중구청장				
	이 사	서 동 욱	울산광역시 남구청장				
	이 사	이 남 철	경상북도 고령군수				
	이 사	박 관 규	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				
	감 사	이 화 진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			
	감 사	김 경 태	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		
주요기능	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			
설립자본금 (단위:백만원)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127,411 (‘11~’24 까지 지자체가 출자· 출연한 금액)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21	2022	2023	재무현황 (백만원) ‘23.12.31기준	자산	25,335
	예산액	12,805	18,069	17,379		부채	1,587
	지자체 지원액	10,422	13,797	12,383		자본	23,748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23.12.31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17,064			15,850		1,593	

3)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	구분	출자	해당없음
주관부서	세정과		출연	57,152천원(시비)

1] 목적 및 필요성
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-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

2] 출연개요

- 연구원 운영 예산('23년: 17,379백만원) 중 12,383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
-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

3] 산출기초

- 출연액 : 57,152천원
 - 전전년도 보통세의 1.2/10,000를 출연
 -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- 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** (단위 : 천원)

구분	합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
출연금	280,472	67,095	58,177	45,986	49,767	59,447

4] 기대효과

-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5]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, 지방재정·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출연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의거하여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 전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, 출연규모는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음.
-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, 지방세제의 발전 연구 및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본 출연안은 사업내용, 근거 및 필요성, 예산 및 산출의 근거를 모두 기재하여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법정 출연금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더라도 출연금이 실제로 지방세정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구미시의 세정 정책에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